

August 19, 2013

중국 <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한국기업의 유의사항

중국정부는 1985년에 <중국인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을 각각 제정하여 중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다가 중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30일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중국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기초로 2013년 7월 2일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이하 “본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관리, 체류 및 거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하에서는 본 조례의 주요 내용 및 한국기업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통비자의 종류가 기존 8가지에서 12가지로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비자의 종류가 D비자(영구거류비자), Z비자(취업비자), X비자(유학비자), F비자(방문비자), L비자(여행비자), G비자(경유비자), C비자(승무원비자), J비자(기자비자) 등 8가지였는데, 기존의 F비자와 L비자를 F비자, L비자, M비자(무역, Business 비자), Q비자(가족모임비자), S비자(친족방문비자)로 세분화하였고, R비자(외국 고급인재 및 전문가 비자)를 추가하여 보통비자의 종류가 총 12가지로 늘었습니다. 특히, 보통비자의 종류에 R비자가 추가되어 향후 중국 정부기관의 특정요구에 부합되는 외국 고급인재 및 전문가들은 R비자를 신청하여 중국정부에서 규정한 출입국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신분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 교육, 의료, 통신 등 업체에서 관련 업무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신분조회가 필요할 경우 출입국 관리국에서 외국인신분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본 조례에 대한 입법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외국인신분 조회의 범위 및 방법은 제한적인바, 외국인의 국적 등 신분 정보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외국인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정보는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외국인 채용 회사 및 유학생모집업체의 보고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한 외국인이 이직 또는 업무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외국유학생 모집업체가 모집한 유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모집업체에서 나가는 등 특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채용회사 또는 유학생모집업체는 중국 출입국관리부서에 관련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유학생이 고학 또는 교외 실습 시 중국 출입국관리부서의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고학(勤工俭学, 공부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함) 또는 교외실습을 할 경우 중국학교의 동의를 거쳐 중국 출입국관리부서에서 유학비자에 고학 또는 교외실습 장소, 기한 등 정보를 추가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 한국기업이 고학 또는 실습 목적의 유학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유학생이 중국 출입국관리부서에서 위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최용원 변호사 [북경사무소] | TEL. +86 10 8447 5343 | E-Mail. ywchoi@shinkim.com |
| ● 원중재 변호사 [상해사무소] | TEL. +86 21 6235 0411 | E-Mail. jjwon@shinkim.com |
| ● 정천주 중국변호사 [서울사무소] | TEL. +82 2 316 4201 | E-Mail. tszheng@shinkim.com |